



## 우편료 4억 원 17년째 체납 중인 '법원', 연체료 부과는 1번 뿐

- 법원 소액우편료로 4억 연체,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체료 미납 -
- 공공기관 징수절차 마련과 연체료 부과 관련 시행령 등 개정 필요 -

□ 민병주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)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'1995년~2013년 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현황' 을 분석한 결과, 공공기관의 총 체납액은 4억 원임.

- 2012년과 비교하여 66,813,300원(14.4%)이 감소하였지만, 체납기관 23곳 중 7곳만 일부 또는 전액 납부했음. 우편료를 체납한 유일한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었고, 체납액에 대해 3%의 연체료가 최초 연체 시에 한 번만 부과되어 17년째 같은 금액의 체납액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음.

○ 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총액은 400,944,120원이었고,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천지방법원이 체납액 1위를 기록함. 또한, 상위 5위권 이내의 체납 기관 중 수원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, 1원도 납부하지 않음.

### <우편료 공공기관 체납 현황>

(단위 : 원)

순위	납부자	납부기한	'13년 체납액	'12년 체납액	'12년 대비 증감	순위 변동
1	인천지방법원	1998.04.20	69,012,100	69,012,100	-	-
2	서울중앙지방법원	2001.01.20	68,037,500	68,037,500	-	-
3	수원지방법원	1999.01.20	65,517,090	82,990,250	▼ 17,473,160	-
4	대전지방법원	1996.02.20	38,834,400	38,834,400	-	-
5	의정부지방법원	1998.01.20	30,041,510	30,041,510	-	-

6	서울지법남부지원	2002.07.31	27,789,250	27,789,250	-	-
7	서울동부지원	1998.01.20	21,849,000	26,831,030	▼ 4,982,030	-
8	부산지방법원	1997.06.20	21,596,310	22,302,220	▼ 705,910	-
9	부천지법	2003.07.21	13,482,790	13,482,790	-	▲ 1
10	광주지방법원	1996.01.20	6,937,200	6,937,200	-	▲ 1
11	성남지원	1997.03.20	6,831,000	6,831,000	-	▲ 1
12	여주지원	1998.07.20	6,727,660	6,727,660	-	▲ 1
13	서울가정법원	1999.01.20	6,221,100	6,221,100	-	▲ 1
14	부산동부지원	1997.03.28	4,982,030	4,982,030	-	▲ 1
15	청주지방법원	1996.11.20	4,688,140	4,688,140	-	▲ 1
16	평택지원	2001.01.20	3,914,830	3,914,830	-	▲ 1
17	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	2000.12.20	2,136,050	2,136,050	-	▲ 1
18	서울고등법원	2001.01.20	1,185,100	1,185,100	-	▲ 1
19	부산지방법원	2003.07.21	705,910	22,302,220	▼ 21,596,310	▼ 12
20	서울북부지원	1998.01.20	415,560	415,560	-	-
21	대전고등법원	1997.01.20	39,590	21,997,270	▼ 21,957,680	▼ 13
-	경기연천등기소	2012.08.28	0	80,790	▼ 80,790	-
-	서울서부지원	2012.08.28	0	17,420	▼ 17,420	-
<b>합계</b>			<b>400,944,120</b>	<b>467,757,420</b>	<b>▼ 66,813,300</b>	

\* 납부 기한은 최후 연체료 발생일 기준임.

- 체납액을 납부한 곳을 제외하고,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체납액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연체료 부과 횡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, 납부 기한 경과 후 한 번의 연체료만 부과되었기 때문임.

<참조>  
**우편법** 제24조(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) ① 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. ③ 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.  
**우편법 시행령** 제34조(연체료)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우편요금등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한외국공관과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**우편법 시행규칙** 제104조(연체료) 영 제3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연체료는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한다.

- 소멸시효(국가채권 5년)가 완성된 체납액은 없음.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체납 독촉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임.

○ 우편료 체납시 징수방법은 아래의 절차에 따름.

**납입고지 → 독촉 → 압류통보 및 압류 → 매각 → 청산(체납액충당)**

\* 체납처분 관련 규정

- 우편법 제24조(체납우편요금 등의 징수방법)① 요금 등의 체납 금액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(체납처분의 절차, 압류금지의 재산, 체납처분의 효력,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등)

○ 우정사업본부는 “관계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납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, 체납 우편요금에 대한 재산조회기능 부여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징수하려고 한다”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.

<참고> 우정사업본부 대책 : 체납 우편요금에 대해서도 재산조회기능 부여 등 관련법령 개정

- 국세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예외로 체납자의 재산조회가 용이하나 우편요금은 체납자 재산조회가 어려워 우편요금 체납에 대해서도 국세 체납자 수준의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
-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(금융거래의 비밀보장) ①항을 우편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, 국세징수법 제7조의 3(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)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활용이 우편요금 체납자에게도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

□ 민병주 의원은 “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우편 사업에서만 7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는데, 우편료 체납도 그 적자에 한 몫 한 것”이라고 지적함.

- 또한, “우정사업본부는 연체료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납부 시까지 연체료를 부과 하는 등 미납 우편료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”고 강조함.

/끝/